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 27.

TikTok Pte. Ltd.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 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'20 년 12 월 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TikTok Pte. Ltd.
대표자	Xu Sihan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Arjun Narayan

2.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사람의 얼굴·신체를 대상으로 만든 포르노·아동포르노 등 성적촬영물 감지 모델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
- 불법성을 띄는 고위험 판단 촬영물의 복제물 및 미세하게 편집된 유사 영상 감지 가능한 모델 개발
- 불법성을 띄는 촬영물과 관련 촬영물을 업로드한 틱톡 계정 식별 및 차단을 위한 영상 심사부서 운영 및 확대 계획
-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 전담부서 운영 및 확대 계획
-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관 및 일반 이용자 신고 전담 및 한국어 지원 가능한 인시던트 매니지먼트팀 운영
- 24 시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편리한 신고를 위해 이메일 주소 운영 (illegalfootage@tiktok.com)
-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후, 불법성을 띄는 콘텐츠를 유추 가능한 키워드 트렌드 파악과 해시태그, 이용자 별명, 이용자 아이디 등에서 검색 차단
- 2019 년 상반기부터 반 년 단위로 불법성을 띄는 성적·아동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 기록 및 전사 투명성보고서 (Transparency Report)로 발간
- 불법성을 띄는 촬영물 식별 및 심사를 위한 영상정책 설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
- 불법성을 띄는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틱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.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모든 동영상, 오디오, 실시간 방송, 이미지, 댓글 및 텍스트를 삭제
 - 알몸 노출, 포르노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는 플랫폼 상에서 금지. 동의 없는 성행위를 묘사 또는 지지하거나 동의 되지 않은 성적 이미지를 공유, 성인의 성 착취를 묘사 또는 지지하는 콘텐츠 또한 금지

-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날짜인 2021년 1월 포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정기적인 업데이트

○ 정책 위반으로 영상 삭제 시 인앱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위반된 특정 정책 안내 및 한정된 정책 위반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 과정 제공. 재심의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책 위반 영상 제거 혹은 계정 영구차단

○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청소년 대상 특별 보호 조치:

i. 다른 이들의 영상을 활용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틱톡의 '듀엣'이나 '이어찍기' 기능에 대해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영상 사용 금지

ii.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영상은 다운로드 금지

iii. 만 16세와 만 17세 사용자의 영상 또한 다운로드 기능을 '끔'으로 기본 설정해 영상 악용을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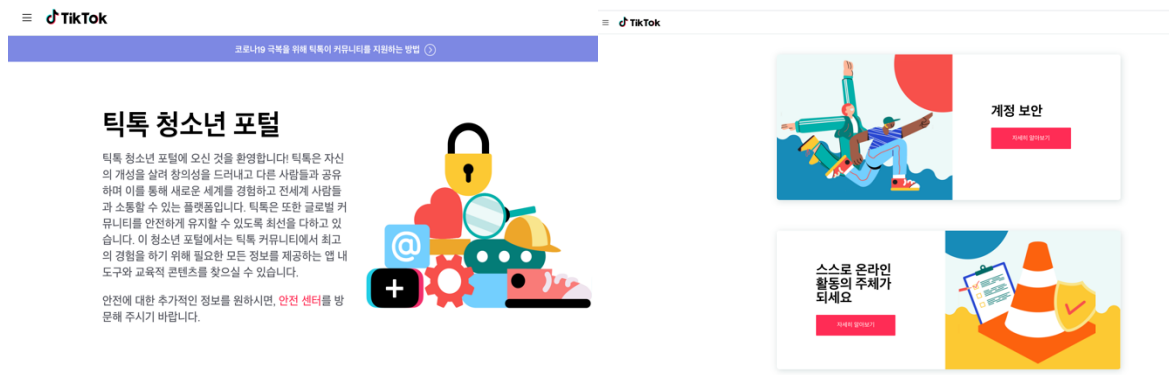
iv.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제한

v. 부모 및 보호자가 청소년 사용자의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'세이프티 페어링' 기능을 소개

a. 세이프티 페어링은 부모와 자녀의 틱톡 계정을 연결해 부모가 자녀의 틱톡 이용 상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. 검색 기능 제어, 댓글 달 수 있는 사람 제한, 계정 공개 여부 설정,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 볼 수 있는 사람 제한, 스크린 타임 관리, 제한 모드와 다이렉트 메시지 가능 대상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주기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.

vi.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가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(age gate) 도입

vii.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안전 자원, 모범 사례, 비디오 제작 애플리케이션 도구 등 안내를 위해 청소년 포털(<https://www.tiktok.com/safety/youth-portal?lang=ko>) 개설



○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, 고시한 10개 기관에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방법 안내

- 2021.1.22., 기관별 이메일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방법 공문 안내

- 명예훼손, 음란물, 허위정보, 저작권,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법 관련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를 포함한 안전자문위원회 운영
- 관련 산업이 직면할 향후 이슈들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진취적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임. 틱톡의 아태지역과 글로벌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영방식 및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해당 위원회는 틱톡 플랫폼과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존의 이슈 및 부상하는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,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예정

3.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
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
 ※ 대상기간 : '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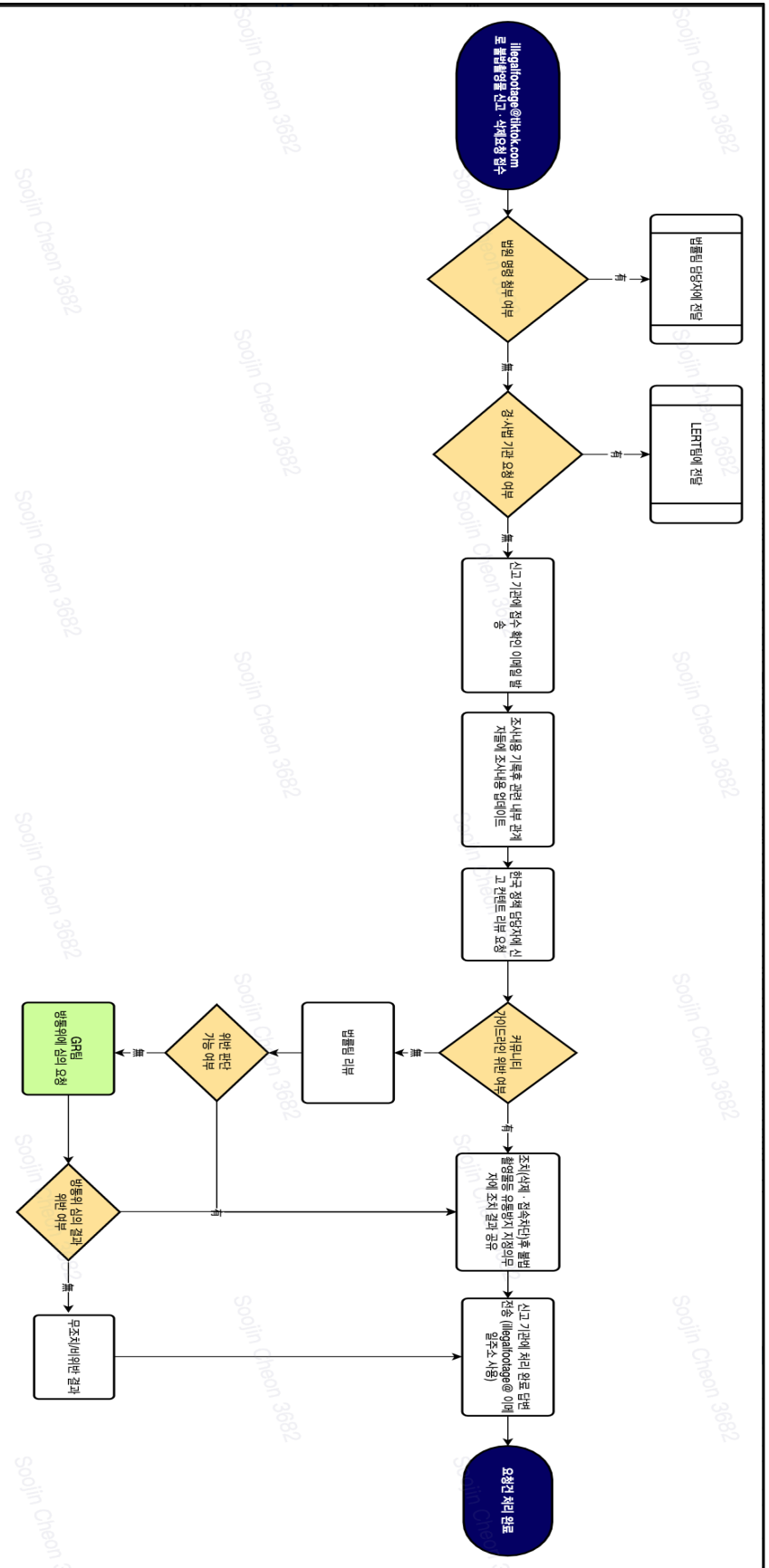
□ '20년 월별 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 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	0	0
		소계											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0	0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0	0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0	0	
	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0	0	
	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	각하 등											0	0	
	소계												0	0	
	삭제·차 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0	0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0	0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0	0	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4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기관과 일반 이용자들이 불법촬영물 등 신고, 삭제 요청할 경우 담당 부서: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팀
- 인시던트 매니지먼트팀 프로세스 맵:



- 내부 케이스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에 조사 및 처리결과 기록 보관 예정
- 신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30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사용

5.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분	소속부서	직위	성명	지정일
정	신뢰와 안전	틱톡 아태지역 신뢰와 안전 부문 총괄	알준 나라얀 (Arjun Narayan)	2020.12.23
부	신뢰와 안전	틱톡 북동아태지역 신뢰와 안전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	천수진	2020.12.23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교육 내용	참석자
교육실시	2020-01-19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률 개정안 개요 • 불법 촬영물의 정의 • 바이트댄스/틱톡의 의무 •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내부 규정 	관계자 총 70 명